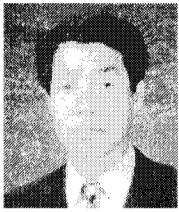


## GAP 한약재, 차별화된 유통체계 구축 시급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농학박사 유용섭



약용작물 GAP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생산농업인에게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내 우수약용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구기자, 당귀, 황기, 작약, 맥문동 5개 작목에 대하여 시범재배를 실시하였다.

우수약용작물 재배관리(GAP)는 재배 농가들로 하여금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약재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수입개방화 체제에서 수입산 한약재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는 제도이다.

2003년 시범재배는 참여한 생산자단체 및 시범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기관의 지원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며,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임에도 약용작물의 GAP에 대한 생산농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제도시행을 위한 관리규정 및 재배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생산자 단체를 주축으로 한 시범농가 선정에서부터 생산자에 대한 GAP교육 및 기술지원, 지자체의 협조하에 이루어진 토양·수질 검사, 생산물의 중금속·잔류농약검사에 이르기까지 GAP 시범운영의 전반적인 추진은 잘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대소비자 홍보로 판로확보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제조제와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임에 따라 제조 노력이 많아지고 수확량이 감소되어 농가의 소득성 보완대책이 필요하였다. 2003년의 경우 수확량 감소는 작물생육기에 잦은 강우와 일조부족으로 인한 기상조건이 더 크다고 판단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등록된 농약에 한하여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하고, 설정된 표준시비량을 지켜 재배하면 안전하면서도 정상적인 수량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속적인 지적증진 노력이 필요하고 기 마련된 표준재배법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에 실시하는 토양 및

수질검사는 전면적인 검사보다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노력과 비용을 줄이고, 수확후에 실시하는 중금속 및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비용 부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GAP 약용작물 생산품은 일반생산품에 비하여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이 확보되었으나 차별화된 유통경로와 가격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홍보 부족으로 일반 소비자와 한약재 대량 소비업체의 GAP 한약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홍보대책이 시급하고,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유통체계 구축과 브랜드화하여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로를 다양화하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 안전성 미확보 농산물 시장에서 설자리 없어

내년에는 대상작목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약용작물 GAP제도가 국내에 뿌리내려 안전하고 품질 좋은 국산한약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믿을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며 이는

전적으로 생산자의 몫이다. GAP 농가는 반드시 약용작물 GAP 표준재배기준을 준수하고 특히 농약 사용은 등록된 농약을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따라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약상의 추천만 믿고 농약을 사용하였다가 생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GAP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고 전 GAP시행 농가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점을 각별히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시범운영농가에서 일부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은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농산물의 GAP제도 도입은 국제적인 추세이며 머지않아 전체 농산물에 도입될 것이다.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농산물은 소비시장에서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처음으로 시행된 시범재배인 만큼 잘된 점은 발전시키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보완하여 GAP 전면시행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약용작물 GAP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관련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 중국에서는 ...

### 세계 한약재 시장 석권 위해 GAP 약재 생산 제도적 지원

중국은 의료시장에서 중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우수한약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정부조직과 제도 및 법령 마련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약재의 해외수출을 위해 국제적인 표준에 맞는 한약재 생산(GAP)에 주력하고 있으며, 관이 적극 협력하여 전 세계 한약재 시장을 석권하려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약유통의 다양화 및 한약 규격화제도의 미정착 등 관련법제의 미흡으로 한약재의 품질관리 미흡 및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더구나 수입한약재의 검사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미흡하고 식품으로 수입되는 한약재가 의약품으

로 둔갑, 내지는 혼용 유통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한약품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수한 한약공급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 신뢰할 수 있는 한약재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측은 한국의 제기동, 대구약령시 등의 시장을 이미 조사하였고, 한국측이 기준미달 의약품을 수입함으로써 중국약재가 마치 불량품, 싸구려 약품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불만 및 위기감을 갖고 있으며 향후 국제표준에 맞는 우수한 한약재를 수출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미 구체화하고 있다.

## 평창군 진부면 GAP 당귀 생산농가

### “GAP 약용작물 가격보장 이뤄져야”



함승주

GAP관리지침에 대한 단계별 숙지사항과 보고사항, 사진촬영 및 기록 등 과정별로 일일이 기록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일이 여간 번잡하고 어

려운 게 아니다. 또한 제조제를 사용하지 않고 손제조를 하려니 인건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고 더구나 농사일로 한창 바쁜 농번기에는 일손 구하기도 쉽지 않다.

그 뿐인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다 보니 생산량은 일반재배 약용작물에 비해 약 3분의1 정도 감소하는 반면 생산원가는 30% 이상 증가하는 것도 생산농가에는 큰 부담이다.

농약 사용을 줄이다 보니 외형상 상품성은 떨어지고 평당 수확량 감소로 가격은 일반재배작물의 20~30%대를 훨씬 웃도는 시세를 형성하다보니 판로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시행과정에서 부딪치는

생약농가의 현실이 이렇다보니 국산한약재의 고품질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이라는 정부의 GAP제도 시행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선뜻 GAP약용작물 생산에 참여할 농가는 그리 많지 않다.

우수농산물관리규범인 GAP제도의 성공적 정착 여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는 가에 달려 있다. GAP 약용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대소비자 홍보는 물론 GAP참여농가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지난 1년간 시범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GAP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서 생산농가와 소비업체 간에 생산원가를 보장하는 선에서의 계약재배가 이뤄지고, GAP약용작물에 대한 판로와 가격보장에 대한 대책이 정책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16일 복지부 한약담당관을 비롯 한국측 대표 9명이 한중 한약재 무역교류 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국의 한약재 시장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시장개방시 우리나라 한약재 시장에 미칠 영향등을 미리 분석하기 위한 것. 중국 북경과 허북성(안국시) 등지를 중심으로 파악한 중국 시장동향과 우수한약재 교류방안 협의결과 보고서 내용을 발췌해 실는다.

지난해 10월16일 한국한약도매협회와 중국약재집단지간 한약재 무역교류협력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한국에서 구체적 기준안을 제시한다면 그 기준에 맞춰 수출할 의사를 밝힌바 있다. 한 중 양국이 기준안을 통일하여 공동으로 품질보증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입품목은 한국정부에서 한약재로 인정한 514개 품목(녹용, 녹각, 사향, 우황, 주사 제외)으로 합의했으며 협정내용은 10월15일부터 향후 10년간 유효하며 상호협약 하에 연장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국내 한약지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국산한약재 자원현황 파악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품질개량 및 대체작물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한약을 위주로 한약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품질등급표시제도를 도입하여 한약의 품질향상과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품목별 지역별로 특화된 전문재배단지를 조성하여 국산한약재도 산업개념 도입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 보고서 내용 중〉